


분류기호 문서번호	주개30321- <i>24</i>	기안용지 (전화: 731-6392)		시행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 10.5.3.1	시		
수신처 보존기간				
시행일자	'87. 7.	<i>3.4</i>		
보조기 기	건설관리국장 전결	법 조 기 관	법무담당관 (고시안심사) 문서봉제	
	주택개발국장 <i>우</i>		협조통제관 행정과장 <i>우</i>	
	개발1계장 <i>우</i>		개발계획계장 <i>우</i>	
기안책임자	김종천(이광석)	개발2계장 <i>우</i>		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	발신 명 의	시	
제 목	도시계획(주택개발 재개발구역) 변경결정 고시			
(제1안) 내부결재				
1. 건설부고시 제512호 (85.11.22)로 구역결정된 신당4 주택개발재개발 구역의 8개구역에 대하여 시장방침 1172호 (87.7.5)로 구역일부 추가 및 구역일부 해제된 내용을 도시계획법 제12조(도시계획의 결정)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(고시)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58조(권한의 위임)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관보에 고시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자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첨부: 1. 고시안 1부.				
2. 주택개발재개발구역 변경결정 도서1부.				
				
(제2안)				
수신: 총무처장관				
제목: 관보게재의뢰				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신당4 주택개발재개발구역의 8개구역에 대하여 별				

첨 고시안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
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안 사본2부.

(제3안)

수신 : 건설부장관

참조 : 도시개발과장

제목 : 도시계획 (주택개발제한구역) 변경결정고시 (보고)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신당4 주택개발제한 구역의 8개구역에 대하여
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개발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
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 하였기 그 처리내용을 보고합니다.

첨부 : 1. 고시문 사본1부.

2. 주택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도서1부.

(제4안)

수신 : 수신처참조

참조 : 주택과장

제목 : 도시계획 (주택개발제한구역) 변경결정 고시 (통보)

1. 신당4 주택개발제한구역의 8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
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고시하였기 그내용을 통보하니,

2.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증명발급등 도시계획 관련업무
처리에 착오없도록 할것.

첨부 : 1. 고시문사본 2부

2. 주택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도서2부.

수신처: 강서, 송동, 시애틀, 강동, 동대, 권영, 주영장

(제5안) 1/2

제재
1981.1.14

수신 : 수신처참조

발신 주택개량과장



제목 : 도시계획(주택개량개발구역) 변경결정 고시(통보)

1. 신당4 주택개량개발구역의 8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 내용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하였기 통보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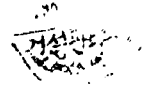
첨부: 1. 고시문사본 1부.

2. 주택개량개발구역 변경결정 도서1부. 끝.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.

고 시 안

서울특별시 구시 제 호



도시계획 (주택개량재개발구역) 변경결정

1. 건설부고시 제512호 (85.11.22)로 구역결정된 신당제4 주택개량재개발 구역의 8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와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 사본은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관할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87. 7.

서울특별시 장

도시계획사	1987.7.14	제 234호
장 자	법 제 12조	법 제 58조

가.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변경결정 조서

재개발 구역명	위 치	면 적 (M ²)			비 고
		기 정	변 경 내 용	변 경 후	
신당4	중구 신당동 347번지 일대	67,498	(증) 1,960	69,458	일부추가
허왕2	성동구 허왕십리동 1038번지 일대	110,788	(증) 293	111,083	"
행 당	성동구 행당동 30 번지 일대	91,000	(증) 377	91,377	일부추가
홍계1	서대문구 홍계동 산1번지 일대	50,790	(감) 2,010	48,780	일부해제
홍계9	서대문구 홍계동 25번지 일대	60,510	(증) 611	61,121	일부추가
명 일	강동구 명일동 209번지 일대	18,400	(증) 223	18,623	"
본동1	동작구 본동 30번지 일대	82,926	(증) 2,900	85,826	"
역촌	은평구 역촌동 22번지 일대	36,364	(증) 1,100	37,464	일부추가
옥수7	성동구 옥수동 24-16번지 일대	65,715	(감) 1,097	64,619	일부해제

나. 변경결정 도면 :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관할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
비치된 도면과 같음.



주택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조서

기실판다기상

연번	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 내 용	변경후	
	계	9개 구역	583,992	(증) 4,359	588,351	
1	신당4	중구 신당동 347번지 일대	67,498	(증) 1,960	69,458	일부추가 진입로확보
2	하왕2	성동구 하왕십리동 1038번지 일대	110,788	(증) 295	111,083	일부추가
3	행 당	성동구 행당동 320번지일대	91,000	(증) 377	91,377	일부추가
4	홍계1	서대문구 홍계동 산1번지 일대	50,790	(감) 2,010	48,780	일부해제
5	홍계9	서대문구 홍계동 25번지 일대	60,510	(증) 611	61,121	일부추가
6	명 일	강동구 명일동 209번지 일대	18,400	(증) 223	18,623	일부추가
7	본동1	동작구 본동 30번지 일대	82,926	(증) 2,900	85,826	일부추가
8	역 촌	은평구 역촌동 22번지 일대	36,364	(증) 1,100	37,464	일부추가
9	옥수7	성동구 옥수동 24-16번지 일대	65,716	(감) 1,097	64,619	일부해제

구역일부 변경 사유서



- 구역명 : 명 일
- 변경 내용

단위:㎡

위 치	당 초 (방침)			변 경		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기 정	변 경	변경후	
강동구 명일동 209번지 일대	18,400	증 210	18,610	18,400	증 223	18,623	증 13

○ 변경사유

- 명일동 209-193호 토지(지목 ; 대지)가 당초 구역지정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되어 종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토지주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므로 구역에 포함하고 사업계획 결정시 공원으로 존치함이 가하다고 사료됨.

* 관련법규 : 토지수용법 제48조 1항 (잔여지등의 수용 청구권)

- 잔여지가 종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이 현저히 곤란할때 토지소유주는 그전부의 수용을 청구 할 수 있다.

1987. 7. 10

지방토목기사보 이 공 석

